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29 발의연월일: 2024. 1. 3.

발 의 자:이해민・이훈기・강훈식

임미애 · 김우영 · 이정헌

황운하 · 김준형 · 김재원

서미화 · 차규근 · 박은정

서왕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,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.

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(이하'비행기록장치'라 한다)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.

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관계인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'비행기록장치'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.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 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.

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'비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'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,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2항 중 "항공·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,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통보시기, 통보방법 및 절차"을 "통보시기, 통보방법 및 절차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회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항공·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)
- 2. 경량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)
- 3. 초경량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 량항공기의 소유자)
- ⑥ 제1항에 따라 항공·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항공사고등

- 가. 항공기사고등의 유형
- 나. 발생 일시 및 장소
- 다. 기종
- 라. 발생 경위
- 마. 「항공안전법」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
- 바. 사상자 등 피해상황
- 사.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
- 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.

2. 철도사고

- 가. 철도사고의 유형
- 나. 발생 일시 및 장소
- 다. 발생 경위
- 라. 사상자 등 피해상황
- 마.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
- 바.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
- 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랑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17조(항공·철도사고등의 발생 제17조(항공·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) ① (생략) 통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 통보시기, 통보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항공·철도종 및 절차 -----사자와 관계인의 범위,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통보시기,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④ 국회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 른 보고 내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에 따라 야 한다. <신 설> 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하는 항공·철도종사자 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 1. 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 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 공기의 소유자) 2. 경량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) 3. 초경량항공기 조종사(조종사 <신 설>

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항공기의 소유자) ⑥ 제1항에 따라 항공·철도사 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

1. 항공사고등

가. 항공기사고등의 유형
 나. 발생 일시 및 장소
 다. 기종
 라. 발생 경위

마. 「항공안전법」 제52조
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
 제1항제3호에 따른 비행기
 록장치에 기록된 자료
 바. 사상자 등 피해상황
 사.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

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 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2. 철도사고

가. 철도사고의 유형
 나. 발생 일시 및 장소
 다. 발생 경위
 라. 사상자 등 피해상황

 마.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

 바.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

 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

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

 사에 필요한 사랑은 국토

 교통부령으로 정한다.